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8. 8 선고 2023가단147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림 담당변호사 황용, 정소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준헌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6. 20.

판 결 선 고 2024. 8. 8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3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머124226(2022나102466) 부당이득금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,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C의 배우자인데,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명의신탁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, 원고는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,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2. 판 단

살피건대,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숙미

별지